

첨부2 채용전형별 가산점

1. 사회형평적 가산점(각 전형별로 적용)

분야	주요내용	가산점
취업지원대상자	·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* 지원자 본인명의로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가산율(5%~10%)에 따라 부여	5~10점
장애인	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* 지원자 본인명의로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	5점
기초생활수급자	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* 지원자 본인명의로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	
북한이탈주민	·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	3점
다문화가정	·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* 가족관계증명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빙이 가능한 자	
경력단절여성	·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	

2. 특수자격 우대사항

분야	주요내용	우대사항	
		서류	필기
사무	·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	면제	가산점 (10점)
기술/연구	·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		

3. 가산점 적용기준

가. 계산방법 : 사회형평적 + 특수자격 가산점

나. 전형별 점수에 추가 가산하여 적용하며, 가산점은 합산 최대 10점 초과 불가다. 동일분야 내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(중복 미허용)

라.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예정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함(인원계산 시 소수점이하는 버림, 단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경우에는 30% 상한에서 제외)

* 채용예정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